2014.2.24 제272章 Weekly

이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포커스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글로벌 이슈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질임금 하락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Weekly 2014.2.24 이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송윤아 연구위원

요익

-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대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안 20개 중 6개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안이고,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형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과 사기적 보험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정부제안 상법안(2014.02.20 대안반영 폐기)이 국회에 접수되었음.
- 그러나 상기 일련의 입법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회사의 책임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됨.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는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하고 사기조사 및 지급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법률로서 정의·금지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 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둘째,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셋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하 이루어지고 있음.
 - 19대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안) 20개 중 6개가 보험사기와 관련 된 법률안임.
 - 뿐만 아니라, 김학용의원은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형법안)을 대표발의하고¹) 정부는 사기적 보험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안)을 국회에 접수함.
 - 이러한 일련의 입법노력의 결과, 2014년 1월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규정이 보험업법에 신설됨(보험업법 제102조의3).²)
 -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상술한 일련의 입법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
 -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차원의 접근은 계약자 등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계약인수심 사에 집중될 수밖에 있는데. 기존 입법활동은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안들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화에 실패하고 답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¹⁾ 제347조의3(보험사기)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 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2조의2(예비, 음 모) 제347조의3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²⁾ 본 조항은 2014년 1월 14일 신설되었으며, 2014년 7월 15일 시행될 예정임.

- 보험사기 정의규정을 신설한 정부제안 보험업법안(2008.12.18)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입법되지 못하였음.
 -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명분을 더 갖게 될 것이며, 보험사기는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별도의 보험사기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함 필요가 없음
- 여러 차례 폐기되었던 보험사기 조사 및 처벌에 대한 법률안들이 큰 수정 · 보완 없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반복 접수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사기 입법노력의 현황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를 중 죄로 처벌하는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 하고 사기조사 및 지급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법률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로서 정의 · 금지함.

2.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과 한계



가. 입법노력

- 2006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 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 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³⁾

〈표 1〉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노력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	처리결과
18대 국회 (2008~ 12)	정부제안 보험업법안(2008.12.18)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폐기
	신학용의원 보험업법안(2009.02.12)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 신설	
	공성진의원 보험업법안(2009.03.16)	보험사기 정의규정,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근거규정, 자료요청권 신설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2010.01.06)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과 보험예방원 설립 및 활동 근거 규정 신설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이성헌의원 보험업법안(2010.09.13)	보험사기 벌칙규정 신설	페기
	공성진의원 형법안(2012.03.16)	보험사기죄 신설	
	공성진의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안(2012.03.16)	상기 형법개정사항의 특경법 편입	
19대 국회 (2012~ 16)	김기선의원 보험업법안(2012.12.31)	보험회사의 정보활용 범위 확대: 보험금 지급 시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정보 활용	대안반영 폐기: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민석의원 보험업법안(2013.01.24)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 신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대동의원 보험업법안(2013.02.07)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서 마련한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대안(2013.12.19)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2014.01.14 공포
	정부제안 상법안(2013.02.05)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대안반영 폐기: 대안을 2014.02.20 법제사법위원회안으 로 제안함.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2013,08,29)	다음의 규정 신설: ①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② 국가,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 ③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의무, ④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⑤ 보험사기행위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⑥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⑦ 보험사기 관련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윈회 심사 중
	김학용의원 형법안(2013.04.15)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 신설	위원회 심사 중
	조원진의원 보험업법안(2013.12.23)	금융위원회의 출석요구권 신설	위원회 심사 중

주: 1) 의원발의 법률안 심사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음: 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공포

^{2) 2014}년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상법대안에서는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이 삭제됨.

³⁾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 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의 명문화, 출석요구권 신설,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등을 포함함.
 -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권만 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셋째,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법률안으로는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 · 음모죄 신설을 주장한 형법안
 과 보험살인, 보험중상해, 보험상해치사,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주장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이 있음.
 - 현재 보험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 즉 위법성인식 결여와 보험사기의 공익범죄적 성격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 신설 및 형벌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조항을 두거나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함.
 -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기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기지급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상법안에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보험회사는 사기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4년 2월 19일 정부제안 상법안(2013.02.05)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법제 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대안에서는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 이 삭제됨.

나. 한계 및 미비점

- -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차원의 접근은 보험계약성립요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인수심사에 집중되며.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의 보완과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함을 적발 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노력이 없음.
 - 먼저, 피보험자의 생사에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즉,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얻게 되면 유효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5)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현행 입법태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6)
 -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적 성격의 폐해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초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절차는 보험사기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현황파악 없이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7)
 - 또한, 느슨한 인수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19대 국회 법률안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음.8)
 - 보험회사가 단기간 집중가입계약⁹⁾ 또는 월소득을 상회하는 과도한 보험료 납입계약 등 보험사

⁵⁾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구분됨.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은 수익자 가 누구이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의미하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음.

⁶⁾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정의됨. 사망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 (2011),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⁷⁾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2011).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8) 18}대 국회 고승덕의원(2010.01.06) 보험업법안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원칙에 대한 입법화를 처음 시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으며,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과 유사한 법률안(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접수되었으나 동 법률안에서는 유사 조항이 누락됨.

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8,511명 (피보험자 기준)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1998년 이후 계약 건)함.

- 기의 위험성이 있는 계약을 여과없이 인수하여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수심 사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지만, 그 구체성과 구속력이 미흡함.
- - 보험회사에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법률로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인정하는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2013.08.29)은 보험계약자 등 보호규정을 포함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나 권익침해 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6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미국 사례: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10)



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후적 접근: 적발 및 처벌

- 미국은 보험사기를 적발 및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중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각 주에 주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 Bureau)을 설치하여 소속 조사관에 경찰권을 부여함.
- 또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목적인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 및 건강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고 있고, 사적인 대화의 녹음, 비디오 감시, 사칭 및 위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적법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조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¹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유아(2012).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보호 방안』. 보험연구워 정책세미나 자료.

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함.
 - →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함.¹¹⁾
 -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의 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봄.
 -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임원,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친족관계라는 이유 만으로 상대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님.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책임

-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 타인의 생명 및 상해 보험 계약의 계약심사에 대한 소송 등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은 피보험자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또한, 피보험이익의 존재 이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계약 성립의 필수요건임.

¹¹⁾ 미국의 경우 영국처럼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계약체결의 성립요건이지 계약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음. 즉,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시 존재하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됨. 이러한 미국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규제(이익주의)는 생명보험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음.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일 지라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 1957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보험회사는 살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로부터 소비자 보호

■ 피보험자 및 청구권자는 불공정보상행위법, 그리고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 배상에 의해 보험회사 등의 무리한 사기조사로 인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견제. 방지할 수 있음.

1)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 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보험지급여부 통보 지연,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 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¹²)

2)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

- 보험회사가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혜택을 받을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이러한 계약의 의무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든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지만, 보험법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는 이 원리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기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만 보고 있음.
- 보험회사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의의무 위반행위는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의 위반 및 불법행위(bad faith tort)가 되며, 그로 인한 청구권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될 수 있음.
 - 그러한 손해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추가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구체적으로, 판례 등을 통해 본 보험회사의 선의 및 공정거래의무 위반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13)

¹²⁾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6.

¹³⁾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에 따라 손해사정인은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범위를 피보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데 특히 피보험자가 그 범위를 모르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손해사정인이 피보험자의 무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선의 및 공정거래의무를 위반하는 것임(MFA Mutual Insurance Company v. Flint, Tenn. 1978).

- ◎ 청구권자의 사고통보 후 사고접수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행위14)
- 청구권자가 손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¹⁵⁾
- 보험회사의 책임이 자명한 보험금청구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행위
- ◎ 청구권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 ◎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행위16)
- ◎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17)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청구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¹⁸)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¹⁴⁾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acknowledge and promptly upon communications regarding a claim arising under an insurance policy and failing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prompt investigation of claims constitute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¹⁵⁾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affirm or deny coverage, reserving any appropriate defense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aving completed its investigation related to a claim constitutes an unfair claim practice by an insurer."

¹⁶⁾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promptly provide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basis in the insurance policy in relation to facts or applicable law for denial of a claim or for the compromise of a settlement constitutes an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

¹⁷⁾ Egan v. Mutual of Omaha Ins. Co.(Cal., 1979), Frommoethelydo v. Fire Ins. Exch, (Cal., 1986), Mariscal v. Old Republic Life Insurance Co.(Cal., 1996).

¹⁸⁾ 청구권자의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청 구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함(Unrah v. Truck Ins. Exch., Cal. 1972). 또한 법원은 보험사기 조사목적으로 청구권자를 감시 또는 미행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고통을 초 래하는 것은 소송사유라고 판시함(Schultz v. Frankfort M. Acc & P.G.Ins.Co., Wis. 1913).

4.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보험사기는 처벌보다는 적발,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보험사기 조사는 소비자 권익(사생활. 개인정보 등)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험사기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규정들을 보험회사가 남용할 가능성이나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조정해야 함.
- - 무엇보다도,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요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는지, 그리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변경 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둘째,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 · 절차 · 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통상, 보험회사는 인수심사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신체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현재 건강상태, 흡연, 음주 등에 의한 위험을,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부업, 취미, 운전, 여행 등에 의한 위험을, 도덕적 위험은 사행적 보험가입, 고의적 보험사고 발생 등에 대한 위험을 의미함.
 - 인수심사 시 신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적용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것으로 각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보험사기의 손실이 보험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약자에게 일부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은 규제대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8대 국회에서 고승덕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보험업법안 제102조의11(보험계약자등 보호) ① 을 수정, 보완한 법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 제102조의11(보험계약자등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것 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2012년 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작성한 계약인 수 모범규준의 일부 내용과 유사함.
- 셋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함.
 -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로부터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익침해사항을 법률에 열 거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kirli